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형사보상청구권 고지 의무 신설〉

■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16호)

2025.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손명수 의원 등 16인
2. 발 의 일 : 2024. 9. 24.
3. 회 부 일 : 2024. 9. 25.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 또는 원판결에 의한 구금이나 형 집행을 당하였을 경우 2)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4)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 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 피고인 및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보상의 경우에는 법원 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보상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죄판결을 선고받거나 불기소 처분·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의 권리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불기소 처분·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각각 대법원규칙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 보상 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 <형사보상청구권 고지 의무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p>제29조의2(형사보상청구에 관한 고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무죄 사건의 피고인이 제2조의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li> <li>2. 면소·공소기각 사건의 피고인이 제26조제1항제1호의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li> <li>3.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제26조제1항제2호의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li> <li>4.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청구 사건의 피고인이 제26조제1항제3호의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li> </ol> <p>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개정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형사보상 및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①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한 경우(법 제2조)

②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법 제26조제1항제1호)

③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법 제26조제1항제2호)

④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법 제26조제1항제3호)

⑤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법 제27조)

그런데,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

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보상**의 경우에는 법원 예  
 규<sup>1)</sup>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보상**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sup>2)</sup> 무죄판결을 선고받거나 불기소·불송치 처분을 받은 자의  
 권리 보호에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법률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불기소 처분·불송  
 치 결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 각각 대법원규칙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  
 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원 및 수사기관에게 고지  
 의무를 부과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불기소·불송치 처분  
 을 받은 자 등의 권리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  
 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sup>3)</sup>.

1)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개정 2022.5.23. 재판예규 제1810호)

**제1조의2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청구에 관한 안내)** ① 재판장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  
 거나 공소기각의 결정을 고지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전산양  
 식 B4752]을 교부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전산양식 B4752]에 관한 영수  
 증 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제1항의 취지를 기재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전산양  
 식 B4752]을 송달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한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은 그 사본 1통을  
 판결 선고기일(결정 고지기일을 포함한다)의 공판조서 다음에 편철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을 송달한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그 송달 내역을 재판사무시스  
 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경찰 불송치 결정**의 경우 관련 규정은 없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수  
 사결정시스템)상 피의자 보상 안내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통지시스템이 존재함

- 구속 신병 이력이 있는 피의자가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제외)이 되는 경우, 피의자 보상 안내 문자  
 자동 발송(익일 13:00), 수동 발송 및 발송내역 확인 가능

3)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이라는 공권력에 의해 인신구속이라는 중대한 법  
 의 침해가 발생한 국민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기본권이다.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공권  
 력 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은 국민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므로 형사보상청구권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은 단순히 금전적인 권리에 불과한

- 참고로,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또는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sup>4)</sup>,

해외 입법례의 경우 프랑스 형사소송법(제149조)은 불기소, 무죄 선고 또는 무죄 확정된 경우 보상을 청구할 권리에 대해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5)</sup>.

- 추가로,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도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sup>6)</sup>하고 있으므로, 형사보상 청구권자를 행사할 수 있는 상속인에게는 해당 내용을 고지를

---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 형사보상청구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는 형사피고인과 국가밖에 없는데, 국가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형사피고인에게 넓게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감수해야 할 공익은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고 액수도 국가 전체 예산규모에 비추어 볼 때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사피고인에게 넓게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법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도 전혀 없다.”

[2010.7.29. 2008헌가4 형사보상법 제7조 위헌제청]

- 4)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Code de procédure pénale」 Article 149

“Lorsque la décision de non-lieu, de relaxe ou d’acquittement lui est notifiée, la personne est avisée de son droit de demander réparation, ainsi que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49-1 à 149-3 (premier alinéa).”

“불기소 처분, 공소 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통보될 때, 해당 사람은 배상 청구 권리에 대해 통지받으며, 또한 149-1에서 149-3조의 규정(첫 번째 항목)에 대한 내용도 함께 통보받는다.”

- 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①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29조(준용규정)** ① 피의자보상에 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형사보상청구 고지의무를 제29조의2에 신설하고 있는데, 제29조<sup>7)</sup>가 피의자보상이나 군사법원 등에 대한 준용규정임을 고려할 때 제28조의2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065 |

- 
- 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준용규정) ① 피의자보상에 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형사보상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청”은 “군검찰부”로, “심의회”는 “「국가배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地區審議會)”로,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1. 군사법원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자
  2. 군사법원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판을 받은 자
  3. 군검찰부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